

제 508 호
1975. 7. 1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95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조례..... 3
◎ 규 칙	
제 1482 호	서울특별시소방서조직규칙폐지규칙..... 10
◎ 고 시	
제 94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0
제 95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및지적승인..... 11
제 96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11
제 97 호	비료판매영업등록취소..... 12
◎ 공 고	
제 147 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12
제 149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거점업체 대체지정공고.....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계 150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취소공고.....	13
계 151호	환지에정지 지정공고.....	14
계 153호	환지에정지 일부변경 지정공고.....	14
◎ 예 규		
계 296호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 지정중 개정.....	15
◎ 사 령	16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7월 1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959 호

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개정

서울특별시지하철 운임조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운임제도) ①지하철운임은 통
산거리 비례제에 의하여 승차거리
8키로까지는 기본운임 40원을 수수
하고 8키로를 초과하는 1키로마다
3원 60전을 가산 수수한다.

별표제 1 호 내지 제 4 호를 각각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호>

연락보통운임조건표 (경인, 경수선.)

발역/착역	남양산	노량진	객방	영등포	구로	가리봉	시흥	판악	안양	명학	군포	부곡	화서	수원	개봉	오류동	역부	부천	송내	부평	동암	주안	계동	동인천	인천	휘경	성북	
시청 앞	40	40	4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40	160	170	7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50	60
종각	40	40	40	50	50	60	70	80	100	100	120	130	140	160	170	70	80	90	100	100	120	130	140	140	150	160	40	50
종로3가	40	40	40	50	60	70	70	90	100	110	120	130	140	170	17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60	40	50
종로5가	40	40	5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50	170	180	8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40	50
동대문	40	40	50	50	60	70	80	90	110	120	120	140	150	170	180	80	90	100	100	120	130	140	140	160	160	170	40	40
신설동	40	50	50	60	70	80	80	100	110	120	130	140	160	180	18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70	40	40
계기동	40	50	50	70	70	80	90	100	120	120	130	140	160	180	190	90	90	100	120	120	130	140	160	160	170	180	40	40
청량리	50	50	60	70	70	80	90	100	120	130	130	150	160	180	19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80	40	40

22-4 제 508 호 시 보 1975. 7. 1

1951

< 별표 제 2 호 >

연락보통정기권조건표

발역 / 착역	남영	용산	노량진	대방	영등포	구로	가리봉	시흥	관악	안양	병학	군포	부곡	화서
시청 앞	1,680	1,680	1,680	1,680	2,100	2,520	2,940	3,360	3,780	4,200	4,620	5,040	5,880	6,720
종각	1,680	1,680	1,680	2,100	2,100	2,520	2,940	3,360	4,200	4,200	5,040	5,460	5,880	6,720
종로 3가	1,680	1,680	1,680	2,100	2,520	2,940	2,940	3,780	4,200	4,620	5,040	5,460	5,880	7,140
종로 5가	1,680	1,680	2,100	2,100	2,520	2,940	3,360	3,780	4,200	4,620	5,040	5,460	6,300	7,140
동대문	1,680	1,680	2,100	2,100	2,520	2,940	3,360	3,780	4,620	5,040	5,040	5,880	6,300	7,140
신설동	1,680	2,100	2,100	2,520	2,940	3,360	3,360	4,200	4,620	5,040	5,460	5,880	6,720	7,560
계기동	1,680	2,100	2,520	2,940	2,940	3,360	3,780	4,200	5,040	5,040	5,460	5,880	6,720	7,560
칭량리	2,100	2,100	2,520	2,940	2,940	3,360	3,780	4,200	5,040	5,460	5,460	6,300	6,720	7,560

제 508 호

시

보

1975. 7. 1

22-5

작역 발역	수 원	개 봉	오류 동	역 부	부 친	총 내	부 원	동 암	주 안	제 물 포	동 인 친	인 친	취 경	성 부
시 청 앞	7,140	2,940	2,940	3,360	3,780	4,200	4,620	5,040	5,460	5,880	6,300	6,720	2,100	2,520
중 가	7,140	2,940	3,360	3,780	4,200	4,200	5,040	5,460	5,880	5,880	6,720	6,720	1,680	2,100
종로 3 가	7,140	2,940	3,360	3,780	4,200	4,620	5,040	5,460	5,880	6,300	6,720	6,720	1,680	2,100
종로 5 가	7,560	3,360	3,360	3,780	4,200	4,620	5,040	5,460	5,880	6,300	6,720	7,140	1,680	2,100
동 대 문	7,560	3,360	3,360	4,200	4,200	5,040	5,460	5,880	5,880	6,720	6,720	7,140	1,680	1,680
신 설 동	7,560	3,360	3,780	4,200	4,620	5,040	5,460	5,880	6,300	6,720	7,140	7,140	1,680	1,680
계 기 동	7,980	3,780	3,780	4,200	5,040	5,040	5,460	5,880	6,720	6,720	7,140	7,560	1,680	1,680
청 량 리	7,980	3,780	4,200	4,620	5,040	5,460	5,880	6,300	6,720	7,140	7,140	7,560		

22-6

제 508호

시

보

1975. 7. 1

<별표제 3 호>

연락통학정기권조건표

발역 / 착역	남영	용산	노량진	대방	영등포	구로	가리봉	시흥	관악	안양	명학	군포	부곡	화서
시정앞	1,000	1,000	1,000	1,000	1,250	1,500	1,750	2,000	2,250	2,500	2,750	3,000	3,500	4,000
종각	1,000	1,000	1,000	1,250	1,250	1,500	1,750	2,000	2,500	2,500	3,000	3,250	3,500	4,000
종3역	1,000	1,000	1,000	1,250	1,500	1,750	1,750	2,250	2,500	2,750	3,000	3,250	3,500	4,250
종5역	1,000	1,000	1,250	1,250	1,500	1,750	2,000	2,250	2,500	2,750	3,000	3,250	3,750	4,250
동대문	1,000	1,000	1,250	1,250	1,500	1,750	2,000	2,250	2,750	3,000	3,000	3,500	3,750	4,250
신선동	1,000	1,250	1,250	1,500	1,750	2,000	2,000	2,500	2,750	3,000	3,250	3,500	4,000	4,500
계기동	1,000	1,250	1,500	1,750	1,750	2,000	2,250	2,500	3,000	3,000	3,250	3,500	4,000	4,500
청담리	1,250	1,250	1,500	1,750	1,750	2,000	2,250	2,500	3,000	3,250	3,250	3,750	4,000	4,500

제 508호

시

과

1975. 7. 1 22-7

1952

차역 발역	수 원	개 봉	오류 동	역 꾸	부 천	총 내	부 명	동 암	주 안	계 발포	동 인천	인 천	취 경	상 부
시 청 앞	4,250	1,750	1,750	2,000	2,250	2,500	2,750	3,000	3,250	3,500	3,750	4,000	1,250	1,500
총 각	4,250	1,750	2,000	2,250	2,500	2,500	3,000	3,250	3,500	3,500	4,000	4,000	1,000	1,250
중 3 역	4,250	1,750	2,000	2,250	2,500	2,750	3,000	3,250	3,500	3,750	4,000	4,000	1,000	1,250
중 5 역	4,500	2,000	2,000	2,250	2,500	2,750	3,000	3,250	3,500	3,750	4,000	4,250	1,000	1,250
동 대 문	4,500	2,000	2,250	2,500	2,500	3,000	3,250	3,500	3,500	4,000	4,000	4,250	1,000	1,000
신 선 동	4,500	2,000	2,250	2,500	2,750	3,000	3,250	3,500	4,000	4,000	4,250	4,250	1,000	1,000
제 기 동	4,750	2,250	2,250	2,500	3,000	3,000	3,250	3,500	4,000	4,000	4,250	4,500	1,000	1,000
청 량 리	4,750	2,250	2,500	2,750	3,000	3,250	3,500	3,750	4,000	4,250	4,250	4,500		

22-8 계 500호

시

과

1975. 7. 1

<별표제 4 호> 수 수 로		
구	분	금 액
1. 여행계시전 여객운임의 환불	가. 보통승차권	40 원
	나. 단체 "	40
	다. 회수 "	80
	라. 정기 "	80
2. 여행계시후 여객운임의 환불	가. 정기 "	80
	나. 회수 "	80
3. 여행계시후 상이질병 또는 공권력발동으로 여행을 중지한 경우 여객운임의 환불		40 원
4. 최종열차에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여객운임의 환불		40 원
5. 분실증명서의 발행으로 인한 운임의환복		40 원
6. 단체승차권의 여정 변경		40 원
7. 정기승차권에 대한 저서 또는 계명청구		80 원
8. 정기승차권에 대한 구간변경		80 원
9. 방향변경		40 원
10. 경로변경		40 원
11. 경로변경, 방향변경의 결합		40 원

규 칙

서울특별시 소방서조직 규칙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197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482 호

서울특별시소방서
조직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규칙 제 1098 호(70.9.1)
서울특별시소방서조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94 호

서울 도시계획용도
지역 지적 승인

1. 건설부고시 제 95 호(75.6.13)
로 일부 변경 결정고시된 준공업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 용도지역 지적 승인하였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73.4.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경기도 고양군에 각각 미
착하여 도시소유지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이게 한다.
1975. 6. 28.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준공업지역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일부지역	64,050 ㎡	

별첨 : (도면생략) ※ 지적승인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
과와 경기도 고양군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95 호

도시 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6 호
(74.1.5)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도봉구 시민봉사
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6. 28

서울특별시장

가. 시설조사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학 교	도봉구 공농동	133 의 25 의 23 필지	141,222 ㎡	

별첨 :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도봉구청
에 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96 호

서울도시계획용도
지역 지적 승인

1. 건설부고시 제 77 호 (75.5.16)
로 일부 변경 결정고시된 상업지
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
획용도지역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
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고시한다.

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
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6. 28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적승인조사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상업지역	송구장중동 2 가	2722 ㎡		
	106-54 부근지역			

별첨 : (도면생략) 지적승인 도면은 서울
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p>◎서울특별시고시제 97 호</p> <p>비로판매영업등록취소</p> <p>이로단속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p>	<p>가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로판매 영업등록취소 사항을 고시함,</p> <p style="text-align: right;">1975. 7. 3</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등록 번호	등록 또는 교부년월일	판매자, 수소 성명 및 판매장 소재지	비로명칭	보증성분량	기 타 규 격
1-3	등록취소 1975. 7. 3 유효기간 자 1974. 7. 16 지 1977. 7. 15	1. 수소,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리봉동 40 김덕보 2. 판매장소 서울중구충무로 1가 25-33 한독비로판 매상사	제 5종복합 비로(액계) (익명복합)	농수산부고시 제 2518 호에 의한 공정 규격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47 호

영등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
계획 변경 공람 공고

1. 당시가 시행중에 있는 영등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
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동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환지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구
획정리 2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이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별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개별 통지하겠으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
여는 이공고로 가름합니다.

1975. 6. 28

서울특별시장

환 지 계 획 변 경 내 역

가. 사업 명	영등(1지구, 1공구) 토지 구획정리 사업
나. 변경 면적	76,950.4명
다. 변경 위치	성동구 반포동 225의 1호외 156필지(162-167부여, 239-255부여)
라. 공람 기간	1975. 6. . - 1975. 7. . (14일간)

◎ 서울특별시공고제 149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대체지정공고

당시에서 지정한 수출품생산 지정
업체중 소재지 및 대표자가 변경된

다음 업체를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
공고한다.

1975. 6. .

서울특별시장

다 음

지 정 취 소					대 체 지 정				
지정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지정 번호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431	미양산업 (수)	한동수	성동구성수 동1가 13-169	인삼차	431	미양산업 수익회사	진정작	성동구성수 동1가 13-169	인삼차
908	(수)다 이아몬드 사	임창욱	영등포구 신도림동 629	야구클럽	908	(수) 다이 아몬드사	박일규	영등포구 신도림동 629	야구클럽
433	풍국기업 사	정연철	성동구성수 동1가 136	라벨	433	풍국기업사	정연철	성동구성수 동2가 273-26	라벨
811	진한상사	한석철	용산구우암 동315	수제공업 (장신구)	839	진한상사	한석철	영등포구 교차동 76-88	수제공업 (장신구)

◎ 서울특별시공고제 150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취소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

체 지정 및 자금지원 요령 제3조 제
4조 및 제 6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한다.

1975. 6. 30

서울특별시장

1. 지정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	75수출목표액
905	일진금속공업사	허진규	영등포 양평동1가254	콘벡타	120,000 \$
906	새화정공주식회사	이용오	영등포 은수동100-29	배중, 시계금형	80,000 \$
1202	오성섬유공업사	서원호	상동구 천호동 74-1	자수, 염색	200,000 \$

2. 지정취소 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709	미림섬유 기업사	임종철	마포구 창전동358-1	색 타	폐업
707	길성공업(주)	서도요	마포구 서교동247-72	메리야스	전출폐업
708	한보산업사	박창진	마포구 공덕동105-232	가 눈 섭	행정지시불이행
307	오성염직 공업사	백용국	동대문구 전농동420	염 색	양 도

◎서울특별시공고제 151 호

환지 예정지 지정공고

1. 천호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구획정리 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 및 행정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5조와 제 1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조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

기 공고한다.
 2. 환지 예정지 지정조서 및 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와 천호출장소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송부 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75. 7. 1 .

서울특별시장

- 공 랑 개 요 -

사업지구명 천호토지 구획정리 사업
 변경지역 성동, 천호, 감동, 명일동
 둔촌동, 성내동, 각일부.
 변경필지수 26 필지
 변경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53 호

환지 예정지 일부변경 지정 공고

1.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환지예정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5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예정지를 변경 지정하였기 공고 합니다.
2. 환지 예정지 변경조서 및 도면은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2과와 영동출장소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서류를 송달할것이나, 미수 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첨부 환지 예정지 변경 도서 각 1부

1975. 7. .

서울특별시장

예 규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 번호 지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75년 7월 2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서울특별시에규 296 호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중 개정

서울특별시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관기호 및 수신처번호중 직속 기관란 기관명 "노동위원회 사무국" 다음에 "서울산업대학"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고 경찰서란중

기관명 "남부" 다음에 "태능"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다 음

기	관	명	기	관	기	호	수	신	처	번	호	비	고	
지	속	기	관	서	울	산	업	대	학	산	대	서	산	1
경	찰	서	태	능	경	찰	서	경	17					

부 칙

이 규정은 7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 령

◎ 1975. 7. 1

중 구 지방행정
서기보

지방행정 서기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강 영 창

중 구 지방행정
서기보

지방행정 서기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중구 근무를 명함.

지 광 남

종 로 구 지방행정 서기 최수봉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4호봉을 급함.
세무조사과 근무를 명함.

감사담당관 지방행정 주사보 이근호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경리과 근무를 명함.

총 무 과 지방행정 주사보 정백성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3호봉을 급함.

<p>총무과 근무를 명함.</p> <p>중 구 지방행정 조종학 서 기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농 정 과 지방행정 김문식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3호의 규정에 의거 감 봉 3 월에 처함.</p> <p>◎ 1975. 7. 2</p>
<p>마포구보건소 지방행정 이용춘 주 사</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만리동배수지 지방토목 유치열 부지을 명함. 기 원 보</p> <p>4 호봉을 급함.</p>
<p>성 북 구 지방행정 윤치환 서 기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p>	<p>도봉구 근무를 명함.</p> <p>◎ 1975. 7. 3</p>
<p>동대문구 지방행정 공정용 서 기</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p>	<p>동대문구 지방건축 김순영 기 원 보</p> <p>관악구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방건축 김정문 기 원 보</p>
<p>용 산 구 지방행정 최대식 서 기</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p>	<p>관악구 근무를 명함.</p> <p>동대문구 지방건축 조용희 기 원</p> <p>성동구 근무를 명함.</p>
<p>보건행정과 지방행정 안충업 주 사 보</p> <p>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 월에 처함.</p> <p>영등포구 근무를 명함.</p>	<p>성 동 구 지방건축 손대익 기 원</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성 동 구 지방건축 김철진 기 원 보</p> <p>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성 동 구 지방건축 지원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장구성	관 악 구 지방건축 지원	이일섭
성 동 구 지방건축 지원보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강철일	은평출장소 지방건축 지원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이규당
성 북 구 지방건축 지원보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송상철	은평출장소 지방건축 지원보 성동구 근무를 명함.	유영배
도 봉 구 지방건축 지원 성북구 근무를 명함.	김병운	관 악 구 지방건축 지원보 도봉구 근무를 명함.	천영수
도 봉 구 지방건축 지원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서강원	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사 용산구 근무를 명함.	김정남
도 봉 구 지방건축 지원보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한인수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사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황창환
서대문구 지방건축 지원 도봉구 근무를 명함.	전유영	용 산 구 지방토목 기사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양기로
서대문구 지방건축 지원보 성동구 근무를 명함.	박용창	종 로 구 지방토목 기사보 도봉구 근무를 명함.	조형섭
마 포 구 지방건축 지원 성동구 근무를 명함.	임상규	성 동 구 지방토목 기사보 종로구 근무를 명함.	김석창
용 산 구 지방건축 지원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김정태	도 봉 구 지방토목 기사보 용산구 근무를 명함.	박영수

도봉구	지방토목 기사보	김주석	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원보	지명구
서대문구	근무불 명함.		도봉구	근무불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	지석환	성동구	지방토목 기원	천경택
성동구	근무불 명함.		성북구	근무불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	홍태련	성동구	지방토목 기원	이동훈
도봉구	근무불 명함.		영등포구	근무불 명함.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사보	백용기	성동구	지방토목 기원	양원성
성북구	근무불 명함.		도봉구	근무불 명함.	
마포구	지방토목 기사보	윤재영	성동구	지방토목 기원보	김승기
역형사업소	근무불 명함.		동대문구	근무불 명함.	
용산구	지방토목 기사보	신위식	성동구	지방토목 기원보	이규권
도봉구	근무불 명함.		마포구	근무불 명함.	
관악구	지방토목 기사보	심희순	성북구	지방토목 기원보	전창일
서대문구	근무불 명함.		용산구	근무불 명함.	
종로구	지방토목 기원	정랑교	성북구	지방토목 기원	양철승
관악구	근무불 명함.		마포구	근무불 명함.	
중구	지방토목 기원	이진우	성북구	지방토목 기원보	강수영
도봉구	근무불 명함.		도봉구	근무불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원	양철남	도봉구	지방토목 기원	조점웅
관악구	근무불 명함.		동대문구	근무불 명함.	
동대문구	지방토목 기원	조삼구	도봉구	지방토목 기원	강동현
마포구	근무불 명함.		종로구	근무불 명함.	

도봉구 지방토목기 성동구 근무를 명함.	이순원	마포구 지방토목기 성동구 근무를 명함.	윤수길
도봉구 지방토목기 관악구 근무를 명함.	강태을	용산구 지방토목기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신민식
도봉구 지방토목기 마포구 근무를 명함.	하동운	영등포구 지방토목기 중구 근무를 명함.	한동수
도봉구 지방토목기 보광동 수위지 사무소 근무를 명함.	권순배	영등포구 지방토목기 관악구 근무를 명함.	이한걸
서대문구 지방토목기 도봉구 근무를 명함.	한상현	영등포구 지방토목기 성동구 근무를 명함.	라병주
서대문구 지방토목기 관악구 근무를 명함.	민강호	관악구 지방토목기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박재갑
서대문구 지방토목기 성동구 근무를 명함.	백운길	관악구 지방토목기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윤효창
마포구 지방토목기 관악구 근무를 명함.	김영두	관악구 지방토목기 성북구 근무를 명함.	신정묵
마포구 지방토목기 관악구 근무를 명함.	이종기	관악구 지방토목기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김학진
마포구 지방토목기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김관수	관악구 지방토목기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이원찬

관악구 지방토목 자원보 성동구 근무를 명함.	건영일	제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관악구 지방토목 자원보 성북구 근무를 명함.	이동기	구회정리 1과 지방토목 기사보 안석준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 1월에 처함.
은평출장소 지방토목 자원보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	두일균	도봉구 지방보조 기원 방종익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호의 규정에 의거 감봉에 처함.
영동출장소 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	이종출	수도관리사업소 지방전기 기사보 유동수 자동차 경비사업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토목 기사보 청소 2과 파견 (75. 7. 3-75. 9. 30까지) 근무를 명함.	이학래	지하철본부 지방전기 기사보 이송만 관리동 배수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토목 기사보 관악구 파견 (75. 7. 3-75. 9. 30 까지) 근무를 명함.	김용식	마포구 지방전기 기사보 백구현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용산구 지방보조 기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조성현	도시가스사업소 지방전기 기사보 권오수 마포구 파견 (75. 7. 3-75. 9. 30 까지)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보조 기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신대일	

<p>도시가스사업소 지방화공 기 원 보 김 석 송 명함. 공업화파견 (75. 7.3-75, 9.30 까지) 근무를 명함.</p>	<p>도시가스과 서기관 김형무 전시국가지도회의본부 파견 (75. 7.4-75. 7.19) 근무를 명함.</p>
<p>구회정리1과 지방토목 기 사 보 안 석 준 남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명함.</p>	<p>© 1975. 7. 5 은평출장소 지방행정 서 기 신 경 욱</p>
<p>남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 기 사 보 석 승 진 구회정리1과 근무를 명함.</p>	<p>충청북도 건설을 명함.</p>
<p>관 악 구 지방농림 기 원 정 태 회 공원과 파견 (낙성대) 75, 7.3-75 9.30 까지 근무를</p>	

서 울 특 별 시 장